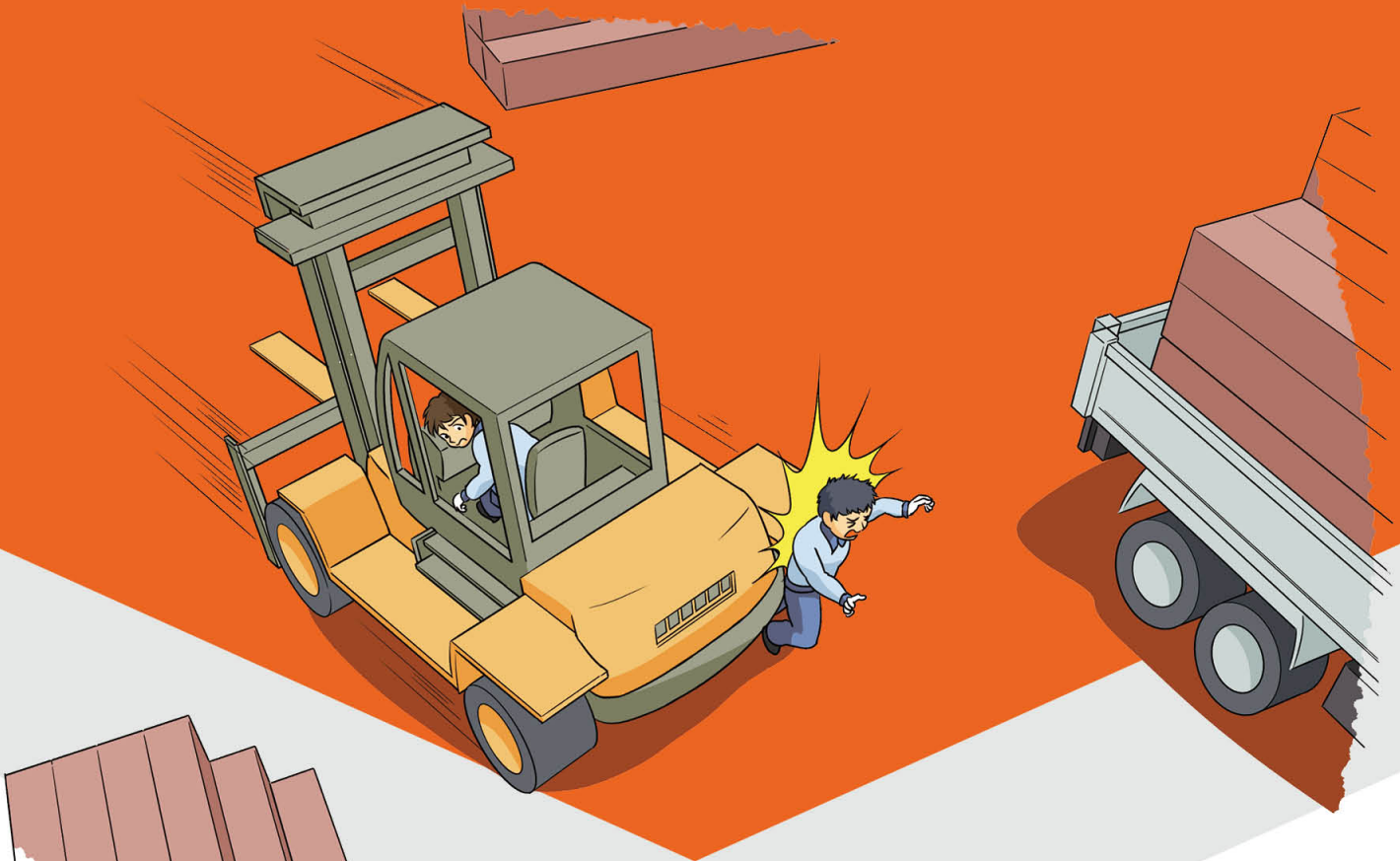


중대재해사태 _ 산재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입니다!



작업장 보행 중 제품 상차를 위해 후진하던 지게차와 충돌



재해 개요



작업자가 트레일러 후미에서 H-beam 적재장소로 이동 중 제품 상차를 위해 후진하는 지게차에 부딪힘

재해발생 원인



- > 작업장 내 보행자 통로 미확보
- > 지게차 작업 반경 내 근로자 출입제한 조치 미실시
- > 작업지휘자 미지정 및 작업계획서 미작성

재해예방 대책



- 작업장 내 보행자 통로 확보
- 운행통로에 운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완전히 제거
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시 작업 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지정하여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

관련 법령

산안법, 안전보건기준에 관한
규칙 및 KOSHA Guide 등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(작업지휘자의 지정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(신호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(접촉의 방지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7조(실거나 내리는 작업)
- 고용노동부 고시(제2015-47)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
- KOSHA Guide(M-185-2015) 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
- KOSHA Guide(G-100-2013) 지게차의 운전자의 안전교육훈련에 관한 기술지침



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!

안전보건 VR 전용관
360vr.kosha.or.kr



작업장 통로 이동 시 이것만은 확인!



보행자용 출입구 별개 설치



경보장치 설치



동선확보, 유도자 배치

핵심위험요인

- 작업장에 보행자 전용 통로가 구분되지 않아 하역운반기계에 부딪힘
- 작업장의 출입구에서 하역운반기계와 근로자의 부딪힘



안전보건실천사항

안전한 통로 확보

- ① 주된 목적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에는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
- ② 하역운반기계의 통로와 인접하여 있는 출입구에서 근로자와의 접촉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비상등·비상벨 등 경보장치를 설치
- ③ 작업장 내에 근로자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이동 통로를 구분하여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할 것
- ④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작업반경에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할 것

